

2025년 독립기념관 직원 채용 서류전형 가이드라인

우리관은 **정부 가이드라인**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, 공정한 서류전형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한 비식별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비식별화 절차 후, 지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사지원서로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므로 **본 서류전형 가이드라인**에 따라 **입사지원서**를 작성하여,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**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I

입사지원서 기재 시 유의사항

- ◆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**착오·누락**으로 발생하는 **불이익**에 대한 **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**
- ◆ 채용사이트 장시간 접속 시 작성내용 미저장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**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사전 작성 후 웹화면에 복사입력 요망**
- ◆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**입사지원서 제출 전 개인 컴퓨터에 별도 저장 요망**
(입사지원서는 최종제출 후 채용사이트에서 아래의 방법을 통해 저장 가능
→ 홈페이지 입사지원>지원서 확인 및 수정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>이력서 확인>PDF 저장)
- ◆ 입사지원서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 불가

1. 작성 기본원칙

가. (성명) 입사지원서 내 성명란, 개명정보 작성란 외 전 항목에 성명 기재 금지

나. (학교)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학교명 기재 금지

※ 학교명 유추가능한 정보(학교 도메인 이메일 주소, 학교명이 포함된 학술지명, 교원자격증 자격번호 등) 기재 금지

☞ 필수기재항목에 학교명이 포함된 경우, 학교명 전체를 비식별화하여 기재

예: 독립대학교 → 독O대학교(X), OOO학교(O), OOOO교(O), OOOOO(O)

독립대학교 학술지 '독립사학' → 독O사학(X), OOO학(O), OOOO(O)

독립대학교 발급 교원자격증 '독립대 제0000호' → 독O대 제0000호(X), OO대 제0000호(O)

2. 필수응시자격 유의사항

가. 학위요건 충족자 : 언론·홍보담당, 전산담당, 전시연출, 연구 및 연구지원

지원자 중 학위요건 충족으로 지원하는 경우 학력사항에 “전공” 기재

※ 서류합격 후 “전공”과 지원서에 기재한 “교육사항”을 증빙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제출 필수

나. 경력요건 충족자 : 언론·홍보담당, 전산담당, 전시연출 지원자 중 경력요건

충족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운전 지원자는 경력사항에 “경력” 기재

※ 서류합격 후 “경력사항”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

다. 자격요건 충족자 : 전산담당 지원자 중 자격요건 충족으로 지원하는 경우와

운전 지원자는 자격사항 또는 면허에 “자격증” 기재

※ 서류합격 후 “자격사항”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제출 필수

3. 경력·경험사항 작성 유의사항 ※ 지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만 평가(인정)

가. 분류기준

구분	금전적 보상 有	금전적 보상 無
기재방법	경력사항으로 기재	경험사항으로 기재

나. (경력) 경력사항에 기관(회사)명은 기재가능하나, 해당기관이 학교인 경우 학교명 기재 금지

※ 예: 한국대학교 부설연구소(X) → OO대학교 부설연구소(O)
독립기념관(O)

다. (경험) 동아리·학술연구·프로젝트 등에 직·간접적 학교명 기재 금지

※ 예: HKU OO동아리(X) → 동아리(O), OO동아리(O), ~관련 동아리(O)

4.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유의사항

가. (공통) 블라인드 채용 준수(직무 무관 인적사항은 비식별화 절차를 운영하나 비식별화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(예)가독성 등)

나. (예외) 논문·전공 언급(내용, 과정)은 가능하나, 인적사항·학교명 기재 금지

II

서류전형 검토 기준 및 예시

1. 서류전형 검토 기준

가. 응시자격 적합여부 :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(전 항목 0점) 처리

- (요건미흡) 공고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(중복지원) 2개 이상 분야 지원, 또는 1개 분야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
- (결격해당)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심사기준

구분	자기소개서	경력 및 경험사항 기술서	교육 및 자격사항 기술서	가점
배점(100점)	40	40	20	추가합산

※ 심사항목별 점수부여기준(평가척도)

배점	S	A	B	C	D
20	20	15	10	5	0
30	30	20	15	10	0
40	40	30	20	10	0

《채용 결격사유》

○ 독립기념관 인사규정 제8조

제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병역법」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병역법 제76조제1항

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,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.

1. 병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
2. 징집·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
3.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

○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